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거복지로드맵	배포일시	2017. 1. 25(목) 총 3매(본문3)	
담 당 자	공공주택정책과	• 과장 김홍목, 서기관 하재범, 주무관 김애란 • ☎ (044) 201-4505, 4508	
	주거복지기획과	• 과장 윤종수, 사무관 이민규, 강대식 주무관 ☎ (044) 201-3355, 4868	
	공공주택공급과	• 과장 이병훈, 사무관 김수현, 주무관 양대모 ☎ (044) 201-4441, 4542	
보 도 일 시	2017년 1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5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예비·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·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

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…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%로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26일, 지난해 발표한 ‘주거복지 로드맵(11.29)’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’ 및 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’, ‘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(시행규칙 안 별표3, 별표4)

- 영구·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*하고, 경쟁 발생 시 자녀수, 거주기간, 청약 납입 횟수,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.

※ 자녀수(3인/2인/1인), 해당 지역 거주기간(3년/1~3년/1년), 청약 납입 횟수(24회/12회~24회/6회~12회), 혼인기간(3년/3년~5년/5년~7년)을 차등하여 가점(3점/2점/1점)

* 행복주택은 동 내용을 반영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(~18.2.5)

②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(15%→25%)하여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강화(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안 제5조)

-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%에서 25%로 상향하고,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%에서 5%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,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 과거('13~'17년간)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(시행령 안 제3조제1항)

-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%에서 25%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(착공) 물량을 연평균 1만 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여, 입주 물량(준공) 물량을 '21년간 '22년에는 연간 2만 5천 호, '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.
- 또한,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% 이내에서 전용면적 60㎡~85㎡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.

④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(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안 제28조 제3항)

-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%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, 신혼부부 특화

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.

⑤ **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**(시행규칙, 안 제23조의3 신설)

-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(시장·군수·구청장)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%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
-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%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□ 이번 입법예고 되는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,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(전화: 044-201-4505, 4508, 팩스: 044-201-5659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하재범 서기관(☎ 044-201-4505), 주거복지기획과
이민규 사무관(☎ 044-201-3355), 공공주택공급과 김수현 사무관(☎
044-201-44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